## 예 산 총 칙

## 2022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합 계	7,272,917,228	218, 187, 517
일반회계		6,604,034,482	198, 121, 034
특별회계		668,882,746	20,066,482
	기 타 특 별 회 계	668,882,746	20,066,482
	소방특별회계	292,790,312	8,783,709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314,308,231	9,429,247
	농 어 촌개 발기 금 특 별 회 계	10,818,367	324,551
	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	9,452,883	283,586
	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	2,386,807	71,604
	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	37,421,176	1,122,635
	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	1,704,970	51,149

- 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"와 같다.
-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 없음.
- 제 4조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음.
- 제 5조 명시이월사업은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-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9,026,581천원으로 한다.
- 제 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53,5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- 제 9 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과 그에 따른 도비부담금 및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(명시이월, 계속비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